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석사학위논문

하버마스의 자율적 공론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하 유 정

2013년 2월



문학 석사학위논문

하버마스의 자율적 공론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하 유 정

2013년 2월



하버마스의 자율적 공론장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하 유 정

지도교수 박 구 용

하유정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양 현 (인)

심사위원 정 미 라 (인)

심사위원 박 구 용 (인)

2013년 2월



〈목 차〉

* 목차	i
* 국문초록	ii
I. 들어가며	1
II.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생	4
1. 국가와 사회의 분리	5
2. 새로운 사회적 공간의 출현	8
III.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과 한계	15
1. 공개성의 원리	15
2. 공적 합의로서 여론	19
3. 부르주아 공론장의 한계	24
IV. 현대 공론장의 원리와 제도화	27
1. 담론원리	27
2. 의사소통적 권력	32
V. 시민사회와 자율적 공론장	36
1.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	36
2. 자율적 공론장의 의미와 정치적 기능	40
VI. 나오며	45
* 참고문헌	47
* Zusammenfassung	49



하버마스의 자율적 공론장에 관한 연구

하 유 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철학과
(지도교수: 박구용)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사실성과 타당성』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공론장’의 개념과 원리를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자율적 공론장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검토한다. 하버마스는 점점 파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의 규범적 토대를 공론장에서 찾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사적 이해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공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공론장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개념에서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합리적 토론과 공적 합의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교환이라는 체계의 원리가 시민들 간의 합의와 의사소통을 점점 대체할 때 어떻게 공론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버마스는 초기의 공론장 개념을 수정하고,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으로 보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18, 19세기에 등장한 공론장의 역사적 발생 과정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II). 다음으로 하버마스가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이라고 밝힌 공개성의 원리와 여론의 개념을 서술하고, 그 한계를 밝힌다(III). 하버마스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제시한 담론원칙과 의사소통적 권력 개념이 초기 공론장 개념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IV).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형성되기 위한 자율적 공론장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V).



I. 들어가며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이래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시민사회는 개별적인 이해관심을 갖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등장한 사회적 공간이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이런 사적 특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집합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비공식적인 공적 담론을 형성한단 공공성의 특징도 포함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적 특성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연대가 파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개인들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연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대립적 요소들을 매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성을 보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자체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시장권력의 강력한 지배 아래 시민들은 국가정책과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고 공동선을 창출하는 정치적 구성원의 역할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적 이해관심에만 매몰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개입의 확대로 행정 권력이 거대화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원활하게 매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동력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체계의 원리에 의해 약해진 민주주의의 동력을 합리적 토론과 공적 합의에 기초한 여론 형성공간인 공론장에서 복원하려고 한다. 그의 공론장 개념은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과 공적 합의가 공공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규범적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적 개인들은 공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더 나은 논거를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해관심을 넘어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행정 체계는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합리적 토론의 공간으로서 공론장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론장의 구조변동』¹⁾을 추동시킨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의사소통행위이론』²⁾에서 생활세계에 내재된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담론의 규범적 조건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나아가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³⁾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현실화 가능성을 공론장의 법적 제도화를 통해 설명한다.⁴⁾ 이처럼 공론장은 전 저작에 걸쳐 하버마스가 탐구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그 원리가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사실성과 타당성』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율적 공론장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18, 19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처음 합리적 토론의 공간이 발생한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발생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경계가 생겨난다.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틈새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적 공간이었다. 하버마스는 당시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공간이 탄생할 수 있던 역사적 조건을 핵가족에서 발달된 주체성과 문예 공론장에서 학습된 비판적 이성으로 꼽는다(Ⅱ).

다음으로 필자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은 칸트의 ‘공개성의 원리(Prinzip der Publizität)’를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공개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되는 사안을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비판적으로 토론할 것을 요구하는 합리적 원칙을 뜻한다. 공개성은 시민사회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해서 자치권을 행사하

1) J.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옮김, 나남출판, 2001;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fm.: Suhrkamp, 1990. 이하 SdÖ로 약하고 번역본과 원전 쪽수를 병기함.

2) J.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3) J.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한상진 외 옮김, 나남출판, 2000;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fm.: Suhrkamp, 1998. 이하 FuG로 약하고 번역본과 원문 쪽수를 병기함.

4) FuG, 439쪽; 443쪽.



기 위해 제시한 원칙으로서 이성과 법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하버마스는 여론이 공개성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 여론이란 사적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에 의한 공적 합의를 의미한다. 여론은 시민사회가 국가의 공권력을 비판하고, 나아가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정치적 의지형성의 토대가 된다(Ⅲ).

또한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 초기 공론장의 한계를 살펴보고, 하버마스가 이 한계를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시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정치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희망적 입장을 제시한다. 하버마스는 담론이론을 통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근원적으로 설정해줄 절차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필자는 담론 원리와 의사소통적 권력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여론을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제도화시켜야 하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Ⅳ).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를 위한 공론장의 역할과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생활세계 내부에서 형성된 의견을 영향력 있게 주제화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나아가 의회에 투입하는 ‘문제화’(Problematisierung)의 기능을 수행한다.⁵⁾ 이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때 공론장은 비판과 형성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V).

5) FuG, 432쪽; 436쪽.

II.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생

‘공론장(Öffentlichkeit)’⁶⁾은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을 가리킨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부르주아 공론장이 처음 발생하였다. 이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사적 개인들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을 통해 공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자유로운 시민집단으로 결집하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18세기 이전에도 공론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나,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론장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⁷⁾ 다만 중세시대에 통치권의 속성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대변하는 ‘과시적 공공성(repräsentative Öffentlichkeit)’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⁸⁾ 따라서 근대적 의미에서 여론형성의 공간으로서 공론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에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의 역사적 발생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필자는 ①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분리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특징을 서술한다. ② 이를 바탕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이 어떻게 공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입법에 참여하는 정치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지 서술할 것이다.

6) 독일어 ‘Öffentlichkeit’는 ‘공개성’, ‘공공성’, ‘공론영역’, ‘여론’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번역자인 한승완은 하버마스가 ‘공적 영역(öffentliche Sphäre, Bereich)’을 국가 공권력의 영역으로 특징해서 사용하는 반면 ‘Öffentlichkeit’는 그 자체 사적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적 영역 대신 제도적 차원과 공적으로 토론하는 마당 두 개념을 포괄하는 공론장으로 번역하고 있다. 필자도 한승완의 번역에 따라 ‘Öffentlichkeit’를 공론장으로 번역한다.

7)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폴리스 영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지 않고 서론에서 잠시 언급할 뿐 연관성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 폴리스는 사적 성격과 논쟁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을 공론장 개념의 시작이라고 본다. SdÖ, 128쪽; 116-117쪽.

8) 하버마스에 따르면 중세 시대에 공공성은 통치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당시의 공공성은 하나의 사회부분으로서 공론장의 영역이 아니라, 특정한 지위의 소유자가 자신의 힘을 공공적으로 과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버마스가 중세시대 공공성을 특징짓게 위해 사용한 과시(Repräsentation)라는 개념은 국민이나 특정한 위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자신의 높은 권력을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과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주와 신분들이 국가를 단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국가라는’ 특유한 의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 ‘앞에’ 과시하는 것이다.” SdÖ, 69쪽; 61쪽.

1. 국가와 사회의 분리

공론장이 여론을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근대 서양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공론장이 발생하게 된 18세기 서양 근대의 특징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에서 비롯한다. 국가와 사회의 분리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와 오이코스(Oikos)의 구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아렌트(H. Arendt)에 따르면, 근대 이전까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다.⁹⁾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오이코스가 이러한 구별을 잘 보여준다. 폴리스는 자유 시민의 평등한 참여에 기반을 둔 정치활동의 공적 공간이다. 이때, 자유시민이란 삶의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부터 해방된 가장(家長)을 뜻한다. 이들은 폴리스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재판과 판결을 행하였으며, 전쟁과 같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공동의 활동을 하였다. 이에 반해 오이코스는 여성, 노예와 같은 부자유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사적 공간이다. 이때 여성과 노예 등은 경제활동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서 정치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한 사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폴리스는 오이코스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었던 것이다.¹⁰⁾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국가와 가정으로 구별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뚜렷한 구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근대이전과 달리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사회의 출현이란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이 가정 밖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사적 활동이 아니라 공적 중요성을 가진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9)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공적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첫째,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지각될 수 있는 ‘공동의 것(koinon)’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동의 세계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공적이라는 용어는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통적인 것’의 공간과 장소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사적이라는 용어는 우선 최고, 최상의 인간적인 능력의 박탈을 의미하였다. 타인의 부재를 전제로 인간 삶의 본질적인 것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적’이라는 말에는 공동의 세계와 달리 ‘자신의 것(idion)’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102쪽 이하 참조.

10) 『인간의 조건』, 83쪽.

공동체들은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활동 주변으로 즉시 집중되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이다.¹¹⁾

그러나 하버마스는 아렌트가 사회의 등장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경제적 영역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활동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근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의 발생으로부터 변화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근대 국가의 설립과 그로부터 분리된 부르주아 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의 형성으로 설명한다.¹²⁾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은 근대국가의 관료제와 상비군을 제도화한 공권력 영역과 궁정으로 제한되었으며,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을 포괄하는 부르주아 사회와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의 내적 공간으로서 핵가족은 사적 영역에 속하였다.

하버마스는 공적 영역으로서 근대국가의 설립이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초기 자본주의 발전은 도시의 성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13세기 이후 금융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장거리 무역의 발달과 함께 도시는 증권거래소와 견본시(Messe)로서 자리 잡았으며, 예비적 형태의 우편과 신문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의 발달은 도시경제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기존의 봉건적 지배체제와 양립할 수 있었다.¹³⁾

하지만 16세기 들어 점점 더 확대되는 자기증식적인 자본의 요구가 높아지고 제한된 시장에서의 상품판매에 만족하지 않는 무역회사들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시장의 확장이 요구되면서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와 무역시장의 확대가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과 군사력을 요구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행정 체계와 상비군을 형성하는 정당한 권력행사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국가가 조직되었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오늘날 ‘민족(Nation)’

11) 『인간의 조건』, 99쪽.

12) 하버마스에 따르면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분리된 부르주아 사회의 발생은 처음에는 절대주의 체제의 준립을 위한 조건이었으나 이후에는 절대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조건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 조건으로 ‘상품 교환과 뉴스 교류’의 과정에 주목한다. SdÖ, 79쪽; 70쪽.

13) SdÖ, 80쪽; 70쪽.

이라 불리는 관료제와 점증하는 재정적 수요를 가진 근대국가가 도시의 향토공동체가 국가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¹⁴⁾

이런 배경에서 출현한 근대국가는 행정적인 면에서 국가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과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내무행정을 관료화하고 공권력의 영역을 제도화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국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의 독점적 지위 아래 국내 기업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시장의 개척과 확대를 중점에 두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지향하였다.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행정과 경제의 영역이 구분되면서 경제는 더 이상 폐쇄적 가정경제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단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로 개념화되었다. 경제활동은 가정과 길드(동업 조합)에 묶여있던 폐쇄적 경제활동에서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중심의 상업경제로 조직화되었다. 이제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의 공적 지도와 감독 아래 사적 활동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으로서 부르주아 사회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활동은 가계를 위한 절약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¹⁵⁾ 이처럼 가정경제 바깥으로 나온 경제활동은 국가적이라는 좁은 의미의 공공성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새로운 공공성의 의미로서 일반이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 부르주아 사회는 공권력의 영역에 대응되는 사적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¹⁶⁾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으로 집단적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가정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이 핵가족을 ‘자유로운 내밀성 (Innerlichkeit)’이라는 근대적 의미에서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출현지로 본다. 근대 이전에 대가족은 일가(Haus)의 혈통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과 공동체를 우선시 하였다면, 근대의 핵가족의 형태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혈통에서 자유로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적인 개별 생활을 보장한다. 이로부터 개인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¹⁷⁾

14) SdÖ, 83쪽; 74쪽.

15) SdÖ, 86쪽; 77쪽.

16) SdÖ, 84쪽; 75쪽.

17) SdÖ, 118쪽; 107쪽.

2. 새로운 사회적 공간의 출현

17세기 후반 들어 가속화된 중상주의 정책은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와 사적 영역으로서 부르주아 사회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행정관청은 국부의 창출을 위해 각종 조치와 규제를 통해 영업 활동과 기업 활동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의 관료적 방식으로 기업들의 창의성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위를 통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에 대해 부르주아 사회가 반발하였다. 왜냐하면 국가 개입은 합리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의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행정관청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의 사적 개인들은 스스로를 국가권력의 대립자로 이해하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영역 내에 공적 토론의 사회적 공간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공론장이다.¹⁸⁾

부르주아 공론장은 우선 공중(Publikum)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들은 곧 당국으로부터 규제받는 공론장을 공권력 자체에 대항하여 요구하며, 그 결과 기본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되었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서 교류의 일반규칙에 관해 공권력과 대결한다. 이 정치적 대결의 매체는 특유하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적 논의이다.¹⁹⁾

공론장의 중심에는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능동적 여론의 주체가 되는 부르주아 계층이 자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계층이 이런 능동적 여론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인쇄문화의 발달과 신문의 보급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 발생

18) 하버마스는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개요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고 있다. SdÖ, 98쪽; 89쪽.

사적 부문		공권력의 영역
부르주아 사회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	정치적 공론장	국가 (‘내무행정’의 영역)
	문예적 공론장 (클럽, 신문)	
핵가족의 내부공간 (부르주아 지식인)	(문화적 재화 시장) ‘도시’	궁정 (궁정 · 귀족사회계)

19) SdÖ, 95쪽; 86쪽.

초기에는 동일한 직업군 사이에서 비공개적 서신교환이 이뤄졌고,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파원을 여기저기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비정기적 간행물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우편 제도가 확립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행정관청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관청의 행정적 임무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공중들은 공권력의 수신자가 되었다. 각종 공정보도, 관보, 칙령 등은 사실상 모든 공중에게 수신되는 것은 아니었고, 지방영주, 행정 관리, 법률가, 의사, 목사, 장교, 교수 등 여론주도층들에만 수신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여론주도층에 속하지 않는 수공업자, 소상공인, 자본가, 은행가, 출판업자와 같은 부르주아 계층들이 새로운 시민적 집단을 형성한다.²⁰⁾ 이들이 공권력에 대항하여 합리적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며, 여기서 형성된 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를 매개하고자 하였다.

하버마스는 이처럼 자유로운 시민집단이 합리적 토론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을 두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핵가족 내부의 사생활 경험이다.

사적 영역의 핵심으로서 가족영역은 친밀한 영역, 즉 사생활 영역이라 부른다. 이 영역은 그것이 실제로는 시장의 요구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시장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이라 여겨진다. 사회의 대리인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방식으로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의 선취라는 가족의 양면성은 가족 구성원의 지위에서 표현된다. 그들은 한편으로 가부장적 지배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인간적 친밀함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사인으로서 부르주아는 한 몸 속의 둘이다. 즉 그는 재화와 사람에 대한 소유자인 동시에 다른 인간들 중의 한 인간이다. 그는 부르주아(bourgeois)이자 인간(homme)이다.²¹⁾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있는 것처럼 핵가족 안에서 사생활은 시장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친밀성(Intimität)을 경험하는 영역이다. 부르주아는 재화의 소유자라는 의미에서 사적 개인이지만, 개별적인 이해관심과 무관하게 친밀함을 교류하는 보편적 인간이기도 하다. 친밀성의 경험을 통해 부르주아는 ‘인간’이라는 보

20) SdÖ, 89-90쪽; 80쪽.

21) SdÖ, 132쪽; 120쪽.



편적 자기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친밀함의 교류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전통이나 공동체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만의 내밀성을 존중받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론장을 형성하는 과정은 핵가족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에서 자라난 특유한 주체성을 원천으로 한다.²²⁾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친밀성의 영역에서 자라난 특유한 주체성은 자발성(Freiwilligkeit), 사랑공동체(Liebesgemeinschaft), 교양(Bildung)이라는 인간성의 세 가지 계기를 기초로 한다.

부르주아 가족은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해 성립되고 아무런 강제 없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배우자 쌍방의 지속적 사랑공동체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교양 있는 인격성을 특징짓는, 특정한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능력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발성, 사랑공동체, 교양이라는 세 계기는 인간성의 개념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 인간성은 인류 자체에 내재하며 진정한 인류의 절대적 지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²³⁾

핵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결합된 공동체다. 이 결합은 전통과 관습 또는 사회적 요구와 같은 외적 구속에 구애받지 않고, 두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자유의지에 기초한 두 사람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핵가족 안에서 교양을 쌓으면서 개인들은 사적 이해관심으로부터 독립적인 능력들을 계발하고 발전시킨다.

이 계기들을 통해 개인들은 소유자의 사적 자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편적 인간으로서 자기이해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자기이해는 특별히 편지교환과 일기, 1인칭 소설류 등 문학적으로 매개된 자기 계몽적 대화에 기초한다. 하버마스는 문학적으로 매개된 친밀함, 문학능력을 갖춘 주체성이 실제로 폭넓은 독서공중을 형성했으며, 이로써 핵가족이라는 친밀한 원천을 갖는 주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문예적 논의의 공론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²⁴⁾

22) SdÖ, 118쪽; 109쪽.

23) SdÖ, 122쪽; 111쪽.

24) SdÖ, 126-127쪽; 116쪽.

역사적 조건의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학과 예술을 비평하고 문화를 쫓아다니던 문예 공론장이 광범위한 확대이다. 귀족과 종교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던 문화가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문화적 형성물들, 열람실, 극장, 박물관, 연주회 등에 대한 접근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공적 허용은 활발한 문해비평과 예술비평이 가능한 문예적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였다.²⁵⁾

이러한 사적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속적 토론을 제도화한 문예 공론장은 다음의 세 가지 공통된 제도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²⁶⁾ 첫째, 문예 공론장은 지위와 서열의식에 반대하는 평등한 사회적 교제를 요구한다. 문예적 공론장 안에 들어서면 국가의 법과 시장의 법칙이 정지한다. 문예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진 교제와 토의는 보편적 인간의 동등성에 기초한다. 둘째, 문예적 공론장은 이제까지 의문시되지 않았던 문제를 주제화시킨다. 문예적 공론장은 국가, 특정 지식인계층, 교회가 독점하고 있었던 정보를 반복 재생산하는 대신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셋째, 문예적 공론장은 보편적 참여가능성(Zugänglichkeit)을 전제로 한다. 각각의 문예적 공론장이 겉보기에 배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모든 독자, 청자, 관중이라는 보다 큰 공중에게 자신들의 논의를 개방한다.

이처럼 자유로운 시민집단의 합리적 토론 공간으로서 공론장은 17세기 말경 본격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²⁷⁾ 문예적 공론장에서 사적 소유자 관점의 정치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적 개인들이 인간의 자격으로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자격으로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공권력을 규정하려고 하자마자, 문예적 공론장의 인본성(Humanität)은 정치적 공론장의 효율성을 매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²⁸⁾

25) 하버마스는 초기 문예적 공론장의 형태로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만찬회를 예로 들고 있다. SdÖ, 98쪽; 91쪽.

26) SdÖ, 107-109쪽; 96-97쪽.

27) 하버마스에 의하면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론장은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영국에서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은 은행의 설립과 사진 검열의 철폐를 통한 신문의 발달, 공권력의 의회화를 의미하는 최초의 내각 정부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SdÖ, 136-137쪽; 123-124쪽.

28) SdÖ, 133쪽; 121쪽.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적 개인들은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자신들의 공동 이익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예적 공론장을 통해 축적된 평등하고 공개적인 토론의 경험은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진 정치비평은 공적 의견을 형성했다. 또한 정치적 음모와 부패 등의 비밀스런 내용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의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하게 만들었다. 이제 의회의 모든 활동은 신문을 통해 중계되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이 정치적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 오늘날의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교양과 재산을 갖춘 부르주아 시민들의 의견이 공적 토론을 통해 근거 있는 의견으로 인정받으면서 시민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의회가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처음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목표는 국가의 감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의 법칙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자유화된 시장과 사적 개인의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사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사회가 지닌 이념에 따르면 자유경쟁체제는 자기조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경제외적 심급도 교환교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이 체제는 모든 사람의 복지 및 개인 성취력의 기준에 따른 정의(正義)에 맞게 기능할 수 있다. 자유시장의 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사회는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나타난다.²⁹⁾

공론장의 사적 개인들이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사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지배나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과 분배 모두 합리적 방식에 의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들이 사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시장의 자기조정능력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교환과 교역 과정에 대한 어떠한 외

29) SdÖ, 164쪽; 138쪽.



부적 간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구현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근거로 사적 개인들은 국가가 개인 간의 경제활동을 합리성이 내재된 시장의 법칙에 맡겨두기를 원하였으며, 기업과 국가 간의 무역관계 역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도 자유경쟁이 보장된 자유화된 무역시장에 맡겨두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가 개인들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계약, 사업, 상속의 기본 자유들도 법적으로 보장하기를 요구하였다.

이후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목표는 국가권력과 법이 여론을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법권한의 보장으로 확대되었다. 부르주아는 군주 권위에 의한 통치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치관행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이성과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권력 그 자체를 토론에 부친다. 이 공론장이 의지를 이성으로 전화시키는데, 이 이성은 사적 주장들의 공적 경쟁을 통해 일반이익에서 실천적으로 필수적인 것에 관한 합의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⁰⁾

공론장의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국가권력 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군주의 자의와 비밀관행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이성과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의 법이 여론으로부터 제정되어야 하고 의회가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제도화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합리적 행정부, 독립적 사법부로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고, 이와 함께 국가기관들의 절차에 공개성의 원리가 관철되어 의회심의 과정, 재판절차, 행정과정의 공개성을 요구하였다.

요약하자면 18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와 사적 영역으로서 부르주아 사회의 틈새에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부르주아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공간으로서, 국가

30) SdÖ, 168쪽; 142쪽.



와 사회를 매개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서 사적 영역의 일부로 간주된다. 둘째, 부르주아 공론장은 사적 자율성과 함께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적 자율성은 국가권력의 감독과 간섭을 받지 않는 부르주아 사회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사적 개인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법적 보장을 의미하며, 공적 자율성은 여론으로부터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한과, 권력분립의 원칙, 절차의 공개성을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르주아 공론장이 국가권력과 대결하는 핵심적 무기는 사적 개인들 간의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토론이다. 이때 토론은 일정 정도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초월된 동등한 자격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III.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과 한계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사적 개인들 사이에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합리적 토론을 거친 공적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이 합의가 절대주의 국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동시에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르주아 시민들의 이러한 역동적인 의사소통과 정치참여의 과정은 현대사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동력을 함축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동력이 이론적으로는 칸트(I. Kant)가 제시한 공개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론(öffentliche Meinung)의 개념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의지를 모아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리적 토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공적 의사소통과 정치참여는 점차적으로 국가와 경제 구조에 의해 잠식되어 그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형성과 쇠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 필자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따라 ①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으로 제시되는 공개성의 원리와 ② 부르주아 공론장의 비판과 입법의 정치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여론 개념을 살펴보고, ③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1. 공개성의 원리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을 공개성의 원리로 제시한다.³¹⁾ 그에 의하면 칸트가 법철학과 역사철학에서 전개하고 있는 공개성 원리란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이며, 초기 자본

31) SdÖ, 197쪽; 178쪽.

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보장이라는 사적 자율성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설립이라는 공적 자율성을 정당화하고 매개할 수 있는 이념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론적 대변자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정의로운 질서의 이념’으로서 이성의 실현과정으로 규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영구평화에 대한 초안의 부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내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자유를, 국외적으로는 세계시민적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절대군주의 권위나 강압적 힘에 의한 지배질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실천이성과 이로부터 형성되는 법에 의한 지배질서의 수립을 강조하였다.³²⁾

이러한 칸트의 법철학과 역사철학의 인식에는 두 왕국의 학설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세계를 지성적인 것의 왕국과 현상적인 것의 왕국으로, 인간을 예지적 주체와 경험적 주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실천이성에 의한 선험적 의지의 예지적 통일이 정당화되고, 이러한 정당화가 외적으로 적용될 때에 경험적 의지의 현상적 통일 또한 정당화되며 공론장에서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전자와 후자가 매개된다.³³⁾

칸트가 말하는 공개성의 원리란 공론장에서 토론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단순한 설득을 구분하는 원리다. 공개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타당한지를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공개성에 따른 합리적 토론의 결과로서 공적 합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견해가 확신(Überzeugung)인가 순전한 신조(Überredung)인가 하는 시금석은 외면적으로는 그것을 상통할 수 있으며, 그 견해를 모든 사람의 이성에게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이다.³⁴⁾

칸트에 따르면 신조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의견이며, 확신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이다. 전자가 사적

32) SdÖ, 198쪽; 179쪽.

33) SdÖ, 215쪽; 194쪽.

34)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946쪽(A820=B848).

타당성만을 갖는 개별적 의견이라면, 후자는 객관적 타당성을 담지하는 공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칸트는 신조와 확신을 가르는 기준을 이성적 판단이라고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의견이 사적 신조인지, 아니면 공적으로 합의된 확신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그 의견이 모든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거쳤는지 아닌지에 있다.

따라서 공개성의 원리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주어진다거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통용되는 비밀사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 이해관심이나 주관적 감정에 매몰된 편파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모두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함께, 바깥으로 소리 내어, 합리적으로 토의할 때 실현되는 원리로서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참여가능성을 전제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넘어 인류전체를 향해 의견을 개방하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개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성의 공적 사용과 이로부터 형성되는 공적 법칙의 원리라 표현할 수 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이성의 사용을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내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독자 대주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이성의 사적 사용은 그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기계 장치의 한 부분이 자신을 전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혹은 세계 시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간주하는 한에서, 그리고 저작을 통해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지식인의 자격으로서 그는 확실히 논의할 수 있다.³⁵⁾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계몽되기 위하여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개별 이해관심을 넘어서 보편적 이해관심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35)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편역, 서광사, 2009, 16쪽.



것은 공론장 속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스스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라고 이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³⁶⁾

만약 이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 모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정받을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의 모델로 문인 공화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성의 공적 사용은 이런 학술논쟁이 이루어지는 아카데미인 문인 공화국에 국한되지 않고 커피하우스, 살롱, 만찬회의 형태를 띤 문예적 공론장으로 확대되었다.³⁷⁾

칸트는 이러한 이성의 공적 사용으로부터 법질서의 원리가 되는 공적 법칙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는 공적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가를 규정해야 하는 공적 법칙은 공적 의지의 행사이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법은 출발하며, 따라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인민의 의지 이외에 다른 어떤 의지도 가능하지 않다(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³⁸⁾

공적 법칙으로서 법은 불명확한 타당성이 요구되는 사적 법칙과 달리 이성의 공적 사용으로부터 모아진 모두의 의지로부터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타당성 역시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을 전

36) 『칸트의 역사철학』, 15쪽.

37) SdÖ, 200-201쪽; 181-182쪽.

38)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ed. Ernst Cassirer, Berlin, Bd IV, 378쪽; SdÖ, 203쪽; 184쪽 재인용.



제하고 있으며, 모두의 자유와 일치하는 방식으로부터 상호강제가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2. 공적 합의로서 여론

하버마스는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의 의미를 사적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에 의한 공적 합의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여론을 통해 부르주아 공론장의 비판과 입법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⁹⁾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공론장은 여론을 통해 공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여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여 입법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하나의 정치의식이 발전하는데, 그것은 절대지배에 대항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개념과 법의 요구를 표현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즉 여론을 이 법의 유일한 합법적 원천으로 주장할 줄 아는 정치의식이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여론은 자신이 논쟁적이고 합리주의적 개념을 부여한 규범들에 대해 입법적 권한을 주장하게 된다.⁴⁰⁾

이러한 공적 합의로서 여론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추상적 보편성이라는 형식적 기준이 요구된다. 여론은 재산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개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각 개인들이 주관적이고 특수한 자신의 사적 이해관심은 접어두고 순수한 인간의 자격에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 보편적 관점으로 참여할 때 공적 합의로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⁴¹⁾

둘째, 합리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이 요구된다. 여론은 올바른 판단과 정당성을 검증하는 합리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

39) SdÖ, 177쪽; 161쪽.

40) SdÖ, 131쪽; 120쪽.

41) 같은 곳.

한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의 경쟁을 통해 진리와 정의가 일치하는 참된 의견이 갖는 보다 나은 논증의 힘을 지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⁴²⁾

그러나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합리적 토론에 의한 추상적 보편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 공적 합의로서 여론 개념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⁴³⁾ 더구나 부르주아 공론장이 여론을 통해 공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여론으로부터 법이 제정되는 입법권한을 가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버마스는 결코 짧지 않은 이러한 과정을 여론의 개념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합리적 토론을 거친 공적 합의라는 뜻의 여론 개념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형성된 개념이다. 개념이 형성된 과정은 크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여론의 기능이 정치적 저널리즘의 발달과 함께 점차적으로 비판기능에서 입법기능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던 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혁명에 의해 여론의 비판기능과 입법기능이 일거에 결합되었다.⁴⁴⁾

하버마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홉스(Th. Hobbes)와 로크(J. Locke)의 의견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저널리즘의 발달과 함께 널리 이해된 공공정신을 거쳐 벤담(J. Bentham)에 이르러 비판과 입법의 기능을 함축하는 여론 개념이 발전한다.

홉스는 의견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신념과 판단을 뜻하는 양심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종교내전 이후 군주의 권위에 기초한 국가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로부터 분리된 종교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한 개인이 의견을 가진다는 것을 종교와 같은 사적인 일로 간주하였으며 각 개인의 양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홉스가 사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의견은 사적 개인들이 교회와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기여함으로써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⁴⁵⁾

42) SdÖ, 130-131쪽; 120쪽.

43) 여론은 영어로는 'public opinion'으로, 프랑스어로는 'opinion publique'로, 독일어로는 'öffentliche Meinung'으로 표현되며, 오늘날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 의견이라는 공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영어와 프랑스어의 opinion의 어원은 개인적 의견 또는 근거 없는 판단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라틴어 'opinio'이다. 이러한 어원으로부터 탄생한 의견을 뜻하는 opinion은 이후 '평판(reputation)'과 결합되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정될 만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존경이라는 의미를 이어받으면서, 집단적 의견이라는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단순한 의견 또는 근거는 없지만 인정되고 있는 존경에 기초한 의견들에서 합리적 토론에 의한 공적 합의를 뜻하는 여론 개념의 발전과정이 그리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SdÖ, 178-179쪽; 161-162쪽.

44) 하버마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국가로부터 사회의 분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SdÖ, 191쪽; 173쪽.

45) SdÖ, 180쪽; 163쪽.

홉스의 사적 의견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로크이다. 그는 의견을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의견으로 간주하지 않고 의견에 덕과 악을 심판하는 일종의 사적 검열의 기능을 가진 풍속의 비공식적 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로크는 의견 개념을 사회적 통제나 교회나 국가의 제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의견 개념은 공적 합의로서 여론이라는 말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홉스와 다르게 순전히 선입견에 묶여 있던 의견을 단순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게 하였다.⁴⁶⁾

홉스와 로크의 전통을 거쳐 정치적 저널리즘의 발달과 함께 영국에서 의견은 공공정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공공정신은 정당한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박한 감각이라는 의미와 합리적 토론을 통한 의견이라는 원칙이 아직 함께 결합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⁴⁷⁾

영국에서 여론과 합리적 토론을 보다 분명하게 연관 지은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E. Burke)이다. 그는 ‘미국 상황에 대하여’라는 편지에서 일반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일반의견이란 단순한 의견이 아닌 공적 상황에 대한 사적 숙고와 공적 토론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뜻한다. 이 일반의견은 공공정신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었다.⁴⁸⁾

이러한 버크의 여론개념은 벤담에 의해 보다 명확한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그는 여론을 통해 공권력을 견제하는 비판 기능과 여론으로부터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법 기능이라는 여론의 정치적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공권력 행사에는 많은 유혹이 따르므로 여론에 의한 지속적 통제, 다시 말해 의회 심의로부터 보장된 시민들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

46)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견의 법(Law of Opinion)은 공적 토론에 의한 일치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무언의 비밀스런 일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견의 법은 충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일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의견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르주아들의 여론형성 참여조건인 교양과 재산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습관 표명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SdÖ, 181쪽; 164쪽.

47) 이는 1793년까지도 포스터(F. G. Foster)가 프랑스어 ‘opinion publique’를 여론보다 더 오래된 공공정신이라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과 스틸(Steele)이 공공정신을 신문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일반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볼링브록(H. S. Bolingbroke) 역시 「크래프츠먼」에 실린 기고문에서 ‘야당에 의해 계몽되고 지도된 국민의 공공정신을 권력자의 부패에 반대하는 자유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정신으로서 여론이 계몽된 의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SdÖ, 183쪽; 166쪽.

48) 같은 곳.

로는 의회 역시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의 통찰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는 의회 내부의 공론장과 시민들에 의한 외부의 공론장이라는 정치적 논의의 연속성 위에서 여론을 통해 지배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판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는 벨(P. Bayle)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어 비판과 여론의 개념을 결합시켜 공적 토론을 강조한 중농주의자들과, 일반의지와 여론을 결부시키는 루소(J.J. Rousseau)에 의해 여론 개념이 발전되었다.

로크와 동시대 인물인 프랑스의 백과전서학파의 선구자인 벨은 의견과 비판을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비판을 모든 형태의 의견에 대한 찬반의 숙고라 정의하며, 공권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일로 간주한다. 그에게 이성의 영역은 아직 한 개인의 내면적 영역이다. 결국 벨에 뒤이어 등장하는 백과전서학파들에게 의견 역시 ‘불확실하고 공허한 정신상태’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반해 의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비판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러한 의견이 어떻게 비판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론에 반대하는 사람이며 여론의 적이었다.⁵⁰⁾

18세기 중반 경에 영국의 일반의견에 대응하는 말이 프랑스에서 등장하지만 여전히 백과전서파에서의 순전히 선입견과 관련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여론은 ‘전통과 양식에 의해 떠받쳐지는 민의’를 의미했다.⁵¹⁾ 하지만 중농주의자들은 여론을 계몽된 공중에 의한 비판적 토론을 거친 참된 의견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여론은 사회적 질서의 기초에 대한 공동의 공적 반성의 계몽된 결과이다. 그것은 이 질서의 자연적 법칙을 개괄한다. 여론은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몽된 지배자는 여론의 통찰을 따라야만 한다.⁵²⁾

49) SdÖ, 192-193쪽; 174쪽.

50) 백과전서학파의 책이 독일에서 번역 될 때 독일어 편집자는 의견(de l' opinion)을 성급하게 여론(publique opinion)이라는 말로 옮겨 적었는데, 이 말은 루소가 그의 유명한 예술과 과학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된 여론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여론은 아직 의견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SdÖ, 182쪽; 166쪽.

51) SdÖ, 185쪽; 168쪽.

52) SdÖ, 186-187쪽; 169쪽.

중농주의자들은 여론을 결정하는 일은 학자의 몫이고 통치자인 군주는 전문적 지식에 의해 인도된 공중의 논의로부터 나온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연 질서의 보호자임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공중의 지위를 대변하였지만, 여전히 절대주의적 통치를 옹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⁵³⁾

공적 토론과 여론을 결부시키는 중농주의자들과 달리 루소는 여론을 ‘일반의지(volonté generale)’와 결부시킨다. 그는 사회 상태에서 인간적 본성이 실현된 자연 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타락으로 인간은 불평등해지고 부자유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인간(homme)과 공민(citoyen)으로 분열된 상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분열상태의 원인은 문명의 진보에 있으며, 일반의지의 매개를 통한 사회계약만이 인간을 공민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열치료제이다. 그러므로 루소는 국가로부터 해방된 부르주아 사회와 같은 영역을 상정하지 않는다.⁵⁴⁾ 인간이 공민이며, 공민이 인간인 그에게서 소유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기에 일반의지는 사적이해관계의 경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지양하는 인류의 자연적 본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국가의 헌법정신은 공민의 마음, 관습, 예절, 특히 인민의 의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여론은 단지 일반의지에 의한 비공공적 의견일 뿐이다.⁵⁵⁾

이렇듯 로크의 의견 법칙은 루소의 사회계약을 거쳐 주권 개념으로 발전된다. 루소에 따르면 논의하는 공중의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전한 오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정의 합의만이 필요할 뿐이다. 계몽된 공중의 의견으로서의 여론보다는 건전한 영혼의 비공공적 의견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관습과 법이 일치하는 사회만이 그가 희망하는 자연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의 비공공적 의견인 여론은 로크의 의견의 법과 의미는 거의 일치하지만 기능면에 있어서 입법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53) 하버마스는 엄밀한 여론개념을 최초로 파악하고 그것의 사회적 역할을 숙고한 것으로 보이는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Louis Sebatien Mercier)가 이러한 면밀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본다. SdÖ, 186쪽; 169쪽.

54)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루소의 평가와 달리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진정한 여론 형성의 원천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5) SdÖ, 187-188쪽; 169쪽.



있다. 여기서 여론의 입법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강제력이나 공적 토론이 아니라 역시 일반의지이다. 다시 말해 폴리스의 광장에 모인 계몽된 공중의 논의가 아니라 광장 그 자체로서 각자의 일반의지에 의한 구두의 동의가 여론을 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⁵⁶⁾

이런 중농학파의 계몽된 시민들의 공적 토론에 의한 여론이라는 개념과 루소의 공적 토론 없는 비공공적 의견이라는 두 가지의 여론 개념이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 양극화된 의미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결합되며 영국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 개념으로 나아간다.

3. 부르주아 공론장의 한계

공개성 원리의 관철과 이로부터 형성되는 여론을 통해 절대주의 국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동시에 근대 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부르주아 공론장은 시장 기능의 확대와 국가권력의 지속적 확장에 의해 구조변동을 겪게 된다.⁵⁷⁾

19세기 들어서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상호 침투가 일어나게 되면서, 공론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근대국가와 부르주아 사회를 매개하였던 공론장은 사적 이익을 위한 투쟁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며 보편적 성격을 띤 법은 더 이상 합리적 토론에 참여한 사적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공개성의 원리는 공공연하게 거부되었다. 또한 여론도 정치적 기능을 상실한 채 대중의식을 조작하고 소비문화를 전파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공론장의 기능은 국가와 경제 구조에 의해 잠식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인 공개성 원리가 가지는 한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칸트가 실천이성이라

56) SdÖ, 189쪽; 171쪽.

57) SdÖ, 361-362쪽; 343쪽.

는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대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정당화한 점, 공적 자율성에 대해 사적 자율성을 우위에 둔 점,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정당화의 역할을 사적 개인에게 부여한 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공개성의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

첫째, 칸트에게 있어서 사적 자율성은 실천이성에 근거한 자기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적 자율성 역시 사적 자율성의 자기입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지성적인 것의 왕국과 현상적인 것의 왕국을 구분하는 두 왕국의 학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선험적 의지의 예지적 통일과 경험적 의지의 통일이 상응한다고 본다.⁵⁸⁾ 따라서 사적 자율성이 공적 자율성에 대해 우선적이며, 공적 자율성은 사적 자율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축소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칸트의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모사관계와 사적 자율성의 우선성을 비판한다. 그는 칸트가 자율성 개념을 도덕이론의 좁은 틀 속에 가두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똑같이 근원적이며, 처음부터 경합관계에 놓여 있는데 칸트가 이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비판한다.⁵⁹⁾ 따라서 하버마스는 사적 자율성이 공적 자율성보다 상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공적 자율성이 사적 자율성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둘째, 칸트는 법적 형식 위에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결합시킨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적 자율성이 시민의 공적 자율성과 매개될 때 실정적 형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칸트의 이런 구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자율성 개념을 분명히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사적 개인들의 사적인 시각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 개념을 루소로부터 빌려온 공적이고 민주적인 입법의 모델에 의존하여 정언명령의 법률적 정식 속에서 해명하였다.⁶⁰⁾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의 공개성 원리에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개

58) SdÖ, 204쪽; 184쪽.

59) FuG, 157쪽; 134쪽.

60) FuG, 145-146쪽; 123쪽.

념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설정되어있을 뿐, 양자를 실제로 매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해명되고 있지 않다.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 그 구체적 방안이 해명되기 위해서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매개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칸트 법이론의 건축구조에 따라 은폐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셋째, 칸트는 도덕적 규범의 보편주의적 타당성을 개인의 주관적 자유를 통해 정초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도덕의 정초는 하버마스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주관적 자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행위자는 자기에게 결정적 의미를 갖는 근거가 과연 타인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때문에 법 주체의 사적 자율성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자유, 다시 말해서 발화수반적인 상호의무의 공적 공간으로부터 철수하여 서로에 대하여 관찰하고 서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으로 후퇴하는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⁶¹⁾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적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때 소극적 자유란 주체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의 관점에서 갖는 자유를 의미한다. 관찰자로서 주체는 독백적으로 사유하고, 자신이 사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고자 한다. 반면 참여자로서 주체는 타인과의 상호이해를 지향하며, 공적 공간에 참여하여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의 도덕 이론은 관찰자로서의 주체가 향유하는 사적 자율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1) FuG, 176-177쪽; 153쪽.

IV. 현대 공론장의 원리와 제도화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18, 19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이 쇠퇴하는 과정을 비관적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후기에 이르러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희망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리고 그는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사실성과 타당성』 등의 저작에서 공론장의 동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적 토대를 모색한다.

하버마스는 우선 18세기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이 역사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한다. 부르주아 공론장이 붕괴된 이유는 실천이성에 기초한 공개성의 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개성의 원리는 선험적 도덕 원리에 의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정당화 및 매개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버마스는 이를 극복하고자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관계를 담론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대어 자율성 개념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담론원리(Diskursprinzip)를 제시한다. 담론원리가 형이상학으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 근거는 의사소통 과정에 내재된 합리성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장에서 필자는 ① 담론원리의 의미를 살펴보고 담론이론을 통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적 순환관계를 설명하고, ② 이런 동근원적 순환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적 권력(kommunikative Macht)의 의미와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1. 담론원리

하버마스는 칸트가 제시하는 실천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의 의사소통적 실천에 내재한 보편적 구조에 주목하고 의사소통적 이성(kommunikative

Vernunft)을 제시한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더 이상 개별행위자라든가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주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초한 실천 이성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적 이성은 선험적인 도덕에 갇히지 않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삶의 형식을 구조화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언어사용의 발화수반적(illokutionäre) 결속력을 사용하여 이성과 의지를 합치시킬 수 있고, 강제 없이 동의할 수 있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⁶²⁾ 언어적 상호작용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발화수반적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의 상호주관적 인정을 통해 동의를 형성한다. 이 동의의 과정에는 합의를 통해 도출된 상호작용의 책무는 모두에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⁶³⁾

이러한 의사소통적 이성을 기초로 하버마스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처음부터 똑같이 근원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담론원리를 통해 탈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율성의 이념을 칸트와 같이 실천이성에 따른 도덕원리에 의하여 정당화하지 않고, 도덕원리와 법원리보다 보다 상위에 있는 담론원리를 통해 정당화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담론원리를 규정한다.

D : 가능한 모든 관련당사자들이 합리적 담론으로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만 타당하다.⁶⁴⁾

담론원리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타당하다’는 술어는 행위규범과 관계하며 그것에 상응하는 보편적인 규범적 진술 일반과 관계한다. 그것은 도덕성과 정당성의 구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규범적 타당성의 불특정적 의미를 표현한다. 나는 ‘행위규범’을 시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에서 일반화된 행위기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규범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62) 하버마스는 발화수반적 행위(illokutionäre Akte)와 발화효과적(perlokutionäre Akte) 행위를 구분하면서 발화수반적 행위는 발화 자체를 통해 이해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상호관계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면, 발화효과적 행위는 발화 그 자체가 결과로서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의사소통행위이론 I』, 424-426쪽 참조.

63) FuG, 30쪽; 17-18쪽.

64) FuG, 161쪽; 138쪽.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관련 당사자’라고 부른다. 문제시된 타당성 주장에 관하여 상호이해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를 ‘합리적 담론’이라고 부른다. 단 그 시도가 발화수반적 의무를 통하여 구성된 공적 공간 내부에서 주제와 기고, 정보와 근거의 자유로운 처리를 허용하는 의사소통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⁶⁵⁾

위 인용문에서 나타난 담론원리의 특징은 다음과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담론원리에서 규범적 정당성은 진리와 유사한 타당성 주장으로 이해된다. 규범적 효력의 주장은 담론을 통해 논증될 수 있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판정될 수 있는 도덕적 관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담론원리는 인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담론원리는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않는다. 담론원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맥락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쟁적인 지향들 가운데 올바르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담론원리는 형식적 혹은 절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담론원리는 독백적인 관찰자의 관점이 아니라, 상호적인 참여자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담론의 참여자들은 관찰자들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해석지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호혜적 관점 수용 내지 관점교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동등하게 고려한다. 그러므로 담론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하버마스의 담론원리에 따르면 논증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명백한 근거나 가치평가 기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맥락을 넘어서는 초월적, 보편적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절차로서의 논증적 주장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담론원리는 실천적 담론에서 논증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덕원리(Moralprinzip)와 실천적 담론의 법제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원리(Demokratieprinzip)로 구체화될 수 있다.

원리 D를 충분히 추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기고의 종류나 각 경우에

65) FuG, 161-162쪽; 138쪽.

동원되는 근거들의 종류를 미리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능한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규범을 위하여 이 보편적 담론원리를 특정화할 때 비로소 도덕원리가 생겨난다. 또 법적 형식 속에서 등장하는 행위규범들을 위하여 보편적 담론원리를 특정화할 때 민주주의 원리가 생겨난다. 이 경우 행위규범들은 실용적 근거와 윤리-정치적 근거와 도덕적 근거들 모두의 도움을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⁶⁶⁾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실정법을 통해 정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의 권리체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담론원리를 수평적 사회구성을 위한 법적 형식을 위한 조건에 적용했을 때 이미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에 관한 권리 범주가 생겨난다고 보며, 이를 ‘권리의 논리적 발생(logische Genese von Rechten)’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러한 발생과정이 단계별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동근원적 순환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범주에는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 개의 권리범주가 해당된다. 이때 사적 자율성의 권리범주인 세 가지 기본권은 법의 적용을 받는 수신자로서의 지위만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최대의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이 권리에 대한 필수적 상관물로서 다음 권리가 요청된다.

(2) 법적 동료들의 자유의지적 연합체 속에서 그 구성원의 지위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3) 권리의 소송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 권리보호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기본권.⁶⁷⁾

66) FuG, 162쪽; 139쪽.

67) FuG, 179쪽; 155-156쪽.

그런데 하버마스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사적 자율성에 관한 권리범주들이 헌법의 틀을 짜는 입법자에게 선천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적 자율성에 관한 기본권은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법을 통해 규율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을 계속해서 다시 해석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두 번째 범주의 권리가 생성된다. 여기서 각 개인은 법의 저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로도 규정되는 것이다.

(4)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이 행사되고 정당한 법이 산출되는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에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⁶⁸⁾

여기서도 하버마스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공적 자율성인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은 사적 자율성과 관련된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사적 자율성이 공적 자율성의 주권적 입법을 위해 단순히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내적 순환관계에 있다.

시민들이 정당한 법제정에 관해 토론하고 판단하는 합리적 담론의 형식 자체가 공적 자율성의 권리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코드 자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코드 자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의 주체인 법적 인격체의 지위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인격체의 사적 자율성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적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기본권 없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공적 자율성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매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평등하게 확보된 사적 자율성을 토대로 충분히 독립적일 때에만 자신의 공적 자율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공적 자율성을 적절히 사용할 때에만 자신들의 사적 자율성에 대한 합의 가능한 조정에 도달할 수 있다.⁶⁹⁾

68) FuG, 180쪽; 156쪽.

69) FuG, 179쪽; 155쪽.



하버마스에 의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법의 저자라는 자기 입법의 모티프를 담론원리에 의거하여 독해함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동근원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러한 과정이 영구적 순환관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등한 보장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권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결합이 영구화되어야 한다면, 법제화 과정이 사적 인격체의 주관적인 행위자유와 시민의 의사소통적 자유에 국한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법제화 과정은 법매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정치 권력에 까지, 다시 말해서 법의 실행만이 아니라 법의 제정에도 구속력을 제공하는 권력에 까지 직접 확대되어야 한다.⁷⁰⁾

위 인용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버마스는 법의 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 권력(politische Macht)에까지 시선을 확장한다. 법을 제정하는 권력 속에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매개되지 않을 때, 법의 실행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양자의 매개관계는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의사소통적 권력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상호주관적 권리 인정을 통해 수립된 권리체계가 영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 권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적 효력을 갖지 못한 권리는 시민들 간의 상호주관적 권리인정 과정이라는 단순한 은유적 사건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지배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정당한 구속력이라는 사실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70) FuG, 191-192쪽; 166쪽.

하버마스에 의하면, 사실적 효력을 갖는 정치 권력의 정당화는 권리체계의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담론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절차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 권력으로 분화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둘을 매개하는 것이 법이다.⁷¹⁾ 법의 제정과 연관된 것이 의사소통적 권력이고, 법의 실행의 측면과 관련된 것이 행정 권력이다.

전통적으로 법의 집행과 법의 제정은 구성원들에게 인정된 신성한 토대나 형이상학적 위엄과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통해 견고하게 묶여 있었다. 하버마스는 고대 제도가 단순히 폭력과 억압이라는 외적 강제만을 근거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한다. 고대 제도에도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타당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다만 고대 제도는 공격 불가능해 보이는 권위를 통해 사실적인 위력과 타당한 근거가 결합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이러한 결합을 해체시킨다. 법 제정의 정당성과 법 집행의 정당성은 더 이상 국가가 보유한 외적 강제력으로도, 신성한 권위나 형이상학적 근거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정당한 법은 담론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법적 인격체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⁷²⁾

하버마스는 정당한 법 제정의 정당성을 아렌트의 의사소통적 권력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정당한 법 제정은 의사소통적 권력의 산출에 의존하게 된다.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면서, 권력을 강제 없는 의사소통 속에서 형성된 공동의지의 잠재력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폭력을 타인의 의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한다.⁷³⁾

하버마스는 이러한 아렌트의 논의를 따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에 의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힘으로서 의사소통적 권력이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고 본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국가와 경제에 대해 똑같이 거리를 두는 시민사회의 결사체라

71) FuG, 195쪽; 170쪽.

72) FuG, 214쪽; 188쪽.

73) FuG, 209쪽; 183쪽.



는 기초 위에서 문화적으로 동원되는 공론장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된 의지형성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⁷⁴⁾

의사소통적 권력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으로 전환된 여론을 가리킨다.⁷⁵⁾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은 유권자, 의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선거, 의회, 행정체계 등과 같은 제도화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합리적 의견과 의지형성을 위해서는 관련 주제와 제안, 정보와 근거들에 대한 자유로운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끌어낸 동의는 공식적 의결이라는 필터를 거쳐 권위 있는 정치권력으로 전환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정당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권력은 법적 형식을 통해 행정 권력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행정 권력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⁷⁶⁾ 행정 권력은 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여러 종류의 규제와 법령, 규칙 명령 등을 만들어 행정적 일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 권력은 입법이나 판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의사소통적 권력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⁷⁾

따라서 행정 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에 기반 할 때 정당한 권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 권력은 스스로 규범을 제정할 수 없고, 의사소통적 권력에 의한 법규범의 한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입법부의 법률과 사법부의 법적 적용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의사소통적 권력은 행정 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적용에 따라 사회 전체를 순환할 수 있다.⁷⁸⁾

하버마스는 페터스(B. Peters)의 수문모형을 활용하여 정치 권력의 순환모형을 제시한다. 페터스의 모델에 따르면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정치영역의 의사소통과정과 결정과정은 중심과 주변의 축에 따라 배열되고, 수문체계를 통해

74) FuG, 404쪽; 365쪽.

75)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2003, 21-22쪽.

76) FuG, 212쪽; 186쪽.

77) 이동수,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 2001, 155쪽.

78)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171쪽.

구조화되며, 의사소통 흐름의 방향을 좌우하는 두 개의 문제처리 방식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정치영역의 중심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제도적 복합물로 구성되며, 행정부의 외곽제도들이 정치영역의 내적 주변부를 이룬다면, 외적 주변부는 공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삼는 의견형성적인 결사체들로 이루어진 공론장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들로 구성된다.⁷⁹⁾ 그리고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에 따른 공식적 권력의 순환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론적 독해는 이러한 사회학적 번역을 사용한다면, 구속력 있는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특정한 의사소통의 흐름, 즉 주변에서 시작하여 의회와 법정의 입구에서 (필요한 경우엔 집행하는 행정부의 출구에서)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절차의 수문을 통과한 의사소통 흐름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행정부의 권력과 핵심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매개구조의 사회적 권력이 의회 속에서 형성되는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자립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⁸⁰⁾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정치권력의 순환모델의 핵심은 정당한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나오고 의사소통적 권력은 다시 정당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행정 권력으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담론원리에 따라 정치 권력을 정당화한다면, 체계의 논리에 입각하여 운행되는 행정 권력과 자신의 특수한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사회적 권력을 자율적 공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통해 규제함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근원적 순환관계를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공론장이 시민사회적 결사체들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사회화 유형들 속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⁸¹⁾

79) 페터스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FuG, 474쪽; 186쪽 참조.

80) FuG, 474쪽; 432쪽.

81) FuG, 471쪽; 429쪽.

V. 시민사회와 자율적 공론장

하버마스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⁸²⁾를 단일적인 부르주아 공론장을 넘어 다양하고 자율적인 공론장들의 토대로 재규정한다. 동시에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성화된 공론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는 시민사회를 생활세계의 공적 영역으로서 규정하면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관계를 통해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또한 공론장은 생활세계 내부에서 형성된 의견을 영향력 있게 주체화하고 나아가 의회에 투입하는 문제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때 공론장은 비판과 형성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장에서 필자는 ① 하버마스가 새롭게 정의하는 시민사회 개념을 살펴보고, ② 시민사회의 핵심인 자발적 결사체들이 어떻게 자율적 공론장(autonome Öffentlichkeit)을 형성하고, 비판적 경고체계와 효과적인 문제화라는 두 가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

하버마스는 복잡해진 현대사회를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의 이원화된 사회로 파악한다. 그는 이러한 이원적 사회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활세계 전체는 의사소통행위들로 엮어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행위조정
의 측면에서, 생활세계의 한 구성요소인 사회는 정당하게 규제된 상호관계의 총체로

82)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말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은 헤겔(G. W. F. Hegel)이다.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사회적 노동과 상품거래의 시장경제적 체계로서 부르주아 사회를 뜻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오늘날 완전히 변화된 역사적 상황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재설정된다. 새로운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는 개인들이 개방적인 토의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공적 영역을 뜻한다. 그러나 이 변화된 의미지평 속에서 시민사회는 사적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국가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FuG, 440쪽; 443쪽. ;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과 그 변화에 대해서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 현실사, 2003, 303-309쪽 참조.



구성된다. 또한 그것은 집합체, 결사체, 특정 기능에 특화된 조직들을 망라한다.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이 행위체계들 중의 일부는 사회적 행위영역, 즉 가치와 규범과 상호이해를 통해 통합된 행위영역으로부터 자립화하여 독자적인 코드를 형성한다. 예컨대 경제는 화폐를 통해, 행정은 권력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 체계들도 운행매체의 법적 제도화를 경유하여 사회라는 생활세계의 구성요소에 정착한다.⁸³⁾

생활세계는 행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⁸⁴⁾에 의해 규범적으로 통합되고 언어를 매개로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인데 반해, 체계는 목적 합리성에 의해 주도되고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제도화되고 기능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이다. 하버마스는 이처럼 이원화된 사회 구조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로 나뉜 영역을 법이라는 전달띠를 통해 매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완전히 변화된 역사적 상황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 개념을 재설정한다. 그가 말하는 시민사회 개념은 법과 같은 규범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된 제도가 아니며,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영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와 같이 경제문제만을 중점으로 하는 영역도 아니다.

생활세계와 체계의 이원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사회는 자율적 공론장의 사회적 기초로서, 경제적 행위체계와 공적 행정체계 모두와 구별되는 생활세계의 영역이다.⁸⁵⁾ 또한 정치적 영역의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부, 사법

83) FuG, 472쪽; 429쪽.

84)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외적 강제 없이 자유롭게 타당성 주장을 하고 이를 검증하는 논증적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일상의 의사소통적 실천 속에서 발견되는 합리성이다. 이에 반해 목적 합리성이란 주어진 목적에 비추어 수단사용이 효과적으로 계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합리성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9쪽.

85)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론 2 :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사, 2006, 496쪽.

생활세계의 제도적 질서	교환관계	매체에 의해 조정되는 하위체계
사적 영역	노동력 → ← 노동 수입	경제체계
	수요 → ← 상품과 서비스	
공적 영역	납세 → ← 조직의 업적	행정체계
	대중 충성 → ← 정치적 결정	

부, 의회 등의 중심부와 구별되는 주변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생활세계 전반의 위험과 압력에 대한 감지하고 이를 정치영역의 문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토대이며, 정치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의 주변부이다. 그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 제도적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자발적 결사체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공론장의 의사소통 구조가 생활세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출현한 단체, 조직, 운동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회적 문제상황이 사적 생활사에 불러일으킨 반향을 받아들여 응집시키고 증폭시켜 정치적 공론장으로 확대한다. 일반이익의 문제에 관한 문제해결적 담론들을 조직된 공론장 틀 속에서 제도화하는 결사체들이 시민사회의 핵심을 형성한다.⁸⁶⁾

여기서 자유로운 시민들이란 개별 이해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공적 관심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실천 운동들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결사체들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결사체들⁸⁷⁾이 시민사회의 핵심적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각종 결사체나 단체 등에 의해 평등하고 개방적인 자율적 공론장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시민사회에 자리 잡게 된다.⁸⁸⁾

하버마스는 이 결사체들의 의사소통구조가 자율성과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⁹⁾ 우선 법치국가적 헌법에 의한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에 관한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사적 자율성에 관련된 기본권은 사생활의 불가침성과 각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 자율성에 관한 기

86) FuG, 486쪽; 443쪽.

87) 이러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은 국가와 경제의 영역 바깥의 자발적인 조합 및 협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 문화단체, 아카데미들, 독립적인 매체들, 스포츠 및 여가단체, 토론 모임, 관심 있는 시민들의 그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업단체, 정치적 정당들, 노동조합 그리고 대안적 기구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진우 외,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문예출판사, 1996, 141쪽.

88) FuG, 486쪽; 434쪽.

89) FuG, 488-489쪽; 446쪽.

본권은 의견의 자유, 출판과 보도의 자유, 선거와 정치의 참여 및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사체들은 자유로운 운동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공적 의견형성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제에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합리화된 생활세계가 전제되어야 한다.⁹⁰⁾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 및 하위문화가 존중되어야 하며,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대화 및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공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되는 합리적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실천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운동은 한편으로는 정치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 하버마스는 코옌(J. L. Cohen)과 아라토(A. Arato)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논의에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을 설명한다.

이 운동은 ‘공세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와 관련된 주제를 띄우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가치를 달리 해석하고, 좋은 근거를 동원하여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내고, 제도화된 정치적 의지형성의 파라미터를 변형시키고, 특정한 정치를 위하여 의회, 사법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방어적’ 측면에서 이 운동은 현존하는 결사체 및 공론의 구조를 유지하고, 하위문화적 대항공론과 대항제도를 산출하고,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다지고, 확장된 권리와 개혁된 제도라는 형태로 새로운 활동공간을 획득하려고 시도한다.⁹¹⁾

그러나 시민사회가 전문적 체계영역이 아니므로 정치적 운동형식과 표현형식들을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가 정치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에서 주변부로서 갖는 자기한계 또한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90)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합리화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기술적 혹은 전략적 통제를 행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롭고 동등한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한 상호이해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7쪽.

91) FuG, 491쪽; 447-448쪽.

강조한다. 시민사회는 잠재적인 영향력만을 형성할 뿐이며 직접적인 정치적 권력 자체를 획득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들이 형성하는 담론의 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험적인 힘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정치적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되는 것은 정치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에서 제도화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제정에 동참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날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조직적 복잡성이 떨어지고 행위능력이 약하며, 구조적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가속화된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오면 공론장과 정치체계 속에서 인습적으로 순환되는 의사소통을 역전시켜 전체 체계의 문제해결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⁹²⁾

하버마스는 보통 시민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파악하는 공적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문적 체계와 구별되는 층위의 실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자율적 공론장의 의미와 정치적 기능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율적 공론장은 시민사회의 기초 위에서 생활세계의 합리성이 표출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자율적 공론장은 시민들의 대등한 상호관계에 입각한 합리적 대화를 바탕으로 공적 의견을 형성해냄으로써,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내재된 규범적 잠재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제도나 조직, 규범적 구조물, 체계의 형태로 규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론장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변화 가능한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형성된 결사체들

92) FuG, 504쪽; 460쪽.



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그는 공론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론장을 기술하는 최선의 길은 내용과 태도표명의 소통을 위한, 따라서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로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 흐름들이 걸러지고 종합되어 주제별로 묶인 공적 의견의 더미로 집약된다. 생활세계 전체가 그렇듯이 공론장도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며, 이 의사소통행위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언어에 대한 숙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론장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적 실천의 일반적인 이해가능성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⁹³⁾

기본적으로 공론장에서 소통은 상호이해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인간 상호간의 의견이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함께 있거나 앞으로 함께 할 미래 대화 상대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관계 위에서 그들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협동하여 해석하고 서로의 언어행위에 대하여 태도를 취한다. 이 태도에는 입장표명이 포함될 뿐, 결정의 부담은 면제된다. 결정의 문제는 제도화된 영역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론장에서 발언은 주제에 따라 그리고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도에 따라 분류된다. 정보와 근거들은 가공되어 초점이 명료한 의견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묶인 의견을 공적의견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등장하는 양식과 그것이 ‘누리는’ 광범위한 동의이다.⁹⁴⁾

공적 의견 형성은 개별질문에 대한 개인들의 대답을 모아놓은 여론조사 방식의 통계학적 대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질적 결과로서의 참여자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질적 결과라는 것은 의사소통 실천에 전제된 공동의 규칙에 따라 제안, 정보,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가공하고, 토론과 논쟁을 충실하고 충분히 진행된 이후 형성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적 의견을 형성

93) FuG, 479쪽; 436쪽.

94) FuG, 480-481쪽; 437쪽.

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참여자로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의사소통의 실천 규칙이다. 공적 토론의 과정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며 설득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일반시민들의 공명으로서 동의와 지지를 형성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명료한 토론을 거쳐 공적 의견을 산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자율적 공론장은 물리적 공간의 형태에서부터 가상적 형태의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될 수 있다.⁹⁵⁾

첫째, 공간적 측면으로 추상화된 공론장이 있다. 이 공론장은 서로 교차되는 다수의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공동체적, 하위 문화적 공론장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측면으로 추상화되는 공론장이 있다. 이 공론장은 기능적인 관점들, 주제의 비중, 정치 영역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전문화된 공론장에서부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학적 공론장, 교회의 공론장, 예술가들의 공론장 등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의 밀도, 조직의 복잡성, 범위 등의 수준적 측면에서 추상화된 공론장이 있다. 이 공론장은 술집, 카페에서의 모임처럼 우연적으로 형성된 공론장에서부터, 극장에서의 상연, 학부모모임, 콘서트, 파티, 정당의 집회와 같은 기획된 공론장,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독자, 청중, 시청자들로 구성된 대중매체에 의한 공론장 등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이 사회적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잠식당하지 않고 자율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려면, 스스로 독자적 구조를 형성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장과 그 공중은 전략적으로 행위 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점령되기 이전에 독자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또 자체 안에서 재생산되어야 한다. 순조롭게 기능하는 공론장의 형성을 규제하는 이 법칙과 같은 규칙성은 구성되어 있는 공론장에서는 잠재적 상태로 있다가 공론장이 동원되는 순간에야 다시 효과를 발휘한다.⁹⁶⁾

95) FuG, 495쪽; 451-452쪽.

96) FuG, 483-484쪽; 439쪽.

자유로운 시민으로부터 출현한 공론장과 그저 자유로운 시민 앞에 출현한 공론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공론장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의사소통 권리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나 주변집단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공개적인 혹은 은폐된 형식에 대항하여 실천운동을 형성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공론장은 처음부터 조직권력, 자원, 위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론장에는 상당 정도 국가기구로 편입된 기성 정당과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이익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시장조사와 여론조사들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문적 기능을 행사한다. 권력에 의해 장악되지 않은 자율적 공론장은 현존하는 의사소통의 권리와 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더 급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치 문제를 다루는 자율적 공론장의 경우에는 정치영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의 공명판(Resonanzboden)으로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장은 사적 영역과 정치 영역을 매개하는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정치적으로 기능할 때 크게 ‘신호의 기능’과 ‘효과적인 문제화’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공론장은 비록 전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체에 걸쳐 민감한 센서를 가진 경고체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공론장은 경고체계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압력을 증폭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지각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게 주제화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 그 문제를 극화시켜 그것이 의회에 수용되어 처리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⁹⁷⁾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 한편으로 사적 영역에 대한 민감한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론장은 생활사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상황을 처리함으로써 자극과 추진력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친구라는 좁은 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학교, 직장 동료라는 좀 더 넓은 망으로, 더 나아가 상당히 먼 거리의 낯선 사람들과의 가상

97) FuG, 478쪽; 435쪽.

적 공간이라는 확장된 망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적 영역과 공론장은 빗장을 걸고 있는 각각의 성이 아니라 수로를 통해 삶의 주제들이 흘러들 수 있는 관계망이다. 다시 말해, 사적 영역의 울림이 공론장을 통해 보다 큰 공명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친밀성과 공론장의 공공성이 보장된다.⁹⁸⁾

다른 한편 공론장은 의회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잠재적 영향력으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론장은 사회적 쟁점들을 극대화 시키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공적 아젠더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적 미디어를 통해 추상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민들의 비판적 잠재력을 하나로 모으고, 이것을 제도화된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⁹⁹⁾

98) FuG, 484쪽; 442쪽.

99) FuG, 507-508쪽; 462쪽.

VI. 나오며

현대사회의 행정 권력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적 이성은 우리에게 높은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도구적 이성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보다는 점점 더 야만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이 강화되고 있다.

하버마스는 도구적 이성이 전면화 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을 여전히 민주주의에서, 그러나 보다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사소통적 이성에 기초를 둔 ‘활기찬 시민사회와 역동적인 정치적 공론장’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⁰⁾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하버마스의 초기 저작인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그의 이론적 체계가 정립된 이후 후기 저작인 『사실성과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초석으로 견지된 공론장 개념의 의미와 그 원리를 살펴해보았다.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공론장은 상품교환과 뉴스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발달했다. 초기의 부르주아 공론장은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고 대항하는 공개성을 원리로 삼았다.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적 개인들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을 찾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의 공개성은 후기 자본주의에서 확대된 복지국가의 행정 권력과 시장 권력의 조정을 받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조작적 공개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초기 공론장은 이념적으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매개를 사적 개인의 자유로부터 정당화하는 한계를 갖는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초기 공론장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담론원리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

100) FuG, 한국어판 서문.



에서 사회적 규범은 오직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합의된 결과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선거나 형식적 형태로 환원된 민주주의는 효율과 교환의 원리를 앞세운 체계에 맞서지 못하며, 체계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체계를 비판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 여론 형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공론장이 요구된다.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의 현재를 비판하고, 보다 합리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참고문헌>

- Habermas, J., *Faktizität und Geltung :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fm.: Suhrkamp, 1998.(『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이론』, 한상진/박영도 옮김, 나남출판, 2000.)
- _____,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fm.: Suhrkamp, 1990.(『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옮김, 나남출판, 2001.)
- 박구용, 「다원주의와 담론윤리학」, 『철학』 제76집, 2003.
- _____,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 현실사, 2003.
- _____,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해명」, 『사회와 철학』 제7집, 2001.
- _____,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의 현실적 적용가능성」, 『범한철학』 제23집, 2001.
- 박성수, 「공공영역의 이념 : 역사적 소묘」, 『문화과학』 제23집, 2000.
- 박영도, 『비판의 변증법』, 새물결출판사, 2011.
- 박홍원, 「미디어와 민주주의 : 공론장 개념과 그 함의」, 『언론학연구』 제9집, 2005.
- 아도르노, Th. W./호르크하이머, M.,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 아렌트, 한나,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1996.
- 양해림, 「인권과 민주주의 -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96집, 2005.
- 유주현, 「공론장이론의 문제들」, 『철학연구』 제79집, 2007.
- 이동수, 「하버마스에 있어서 두 권력」, 『정치사상연구』 제5집, 2001.
- 이진우,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문예출판사, 1996.



- 이충진, 「공공성에 관한 철학적 연구 : 칸트 정치철학의 현대적 함의」, 『정치사상연구』 제22집, 2001.
- 이호규, 「칸트의 계몽사상」, 『사회과학연구』 제16집, 2009.
- 임미원,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법철학연구』 제7집, 2004.
-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2003.
- 장은주,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 『철학』 제64집, 2000.
- 준이치, 사이토,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외 옮김, 이음, 2009.
- 최갑수,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제9집, 2001.
-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옮김, 서광사, 2009.
- _____,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 하버마스, 위르겐, 『의사소통행위이론 I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 _____, 『의사소통행위이론 II :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Die autonome Öffentlichkeit von Habermas

Ha, Yujeong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Dr. Park, Goo-yong)

(Zusammenfassung)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as Konzept von „Öffentlichkeit“ und die zugrunde liegenden Prinzipien, die Habermas in seinen Werke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d *Faktizität und Geltung* entwickelt. Auf dieser Grundlage werden anschließend Funktionen und Perspektiven bearbeitet, die eine autonome Öffentlichkeit, wie sie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fordert, eröffnet. Habermas zufolge lässt sich die normative Grundlage der heutigen Gesellschaft in der Öffentlichkeit finden. Er führt das Wachstum der Privatinteressen auf die Entwicklung des öffentlichen Charakters der Gesellschaft zurück. Diese Öffentlichkeit hat eine normative Funktion inne, die sich zeigt, indem ein öffentliches Problem durch rationalen Diskurs und gemeinsame Einigung gelöst wird. Wenn sich aber ein System auf die Prinzipien von Leistung und Tausch gründet, die durch Konsens und Diskurs in der Zivilgesellschaft ausgehandelt werden, wie kann die Öffentlichkeit aktiviert werden? Bei dieser Fragestellung korrigiert Habermas seiner früheren Ansicht von Öffentlichkeit durch seine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Im ersten Teil dieser Arbeit werden die historischen Entwicklungsprozesse der Öffentlichkeit im 18. und 19. Jahrhundert beleuchtet, wie Habermas sie in *Strukturwandel und Öffentlichkeit* darstellt. Danach wird das Konzept der Öffentlichkeit und der öffentlichen Meinung, die Habermas als Ideal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betrachtet, beschrieben und eingegrenzt. Im dritten Teil werden das Prinzip des Diskurses und der Begriff der kommunikativen Gewalt vorgestellt, durch die Habermas seine früheren Vorstellungen von Öffentlichkeit überwindet und seine korrigierten Ansichten in *Faktizität und Geltung* darstellt. Abschließend werden Möglichkeiten der autonomen Öffentlichkeit untersucht, die die freie, gleiche bürgerliche Gesellschaft bildet.